의안번호	제	형
의 결	2023.	•
연 월 일	(제	회)

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9. 1.

##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

의 안 번 호 제 호

제출연월일: 2023. 9. 1. 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고성군 군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#### 1. 감면대상자

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

### 2. 세목별 감면내역

- 가. 주민세
  -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(개인분, 사업소분 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
- 나.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  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- 다. 재산세(「지방세법」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, 이와 같다)
  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 한다.

### 3. 기타사항

- 가.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 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나.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- 1)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제4항
- 2)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2조제5항

## 붙임

#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###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  - 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 - 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 - 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 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. 다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,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,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  - 1.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(지방세 감면율·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·적용 대상자·세목·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)하는 지방세 감면
  - 2. 「지방세법」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
  - 3. 「지방세법」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

- 4.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. 다만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5.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- ③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### □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

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

⑤ 법 제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"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